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9호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명문화 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4.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

2.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3. 구인·구직자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4. 청년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 ③ 시장은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 직업안정법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 제2조의2(채용박람회 등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구직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 시장의 책무 및 취업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명문화한 사항으로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허인환 의원